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2005. 7

한국조세연구원

개 요

- 일 시 : 2005. 7. 20(수) 14:00~17:0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4:00~14:30 개회사 및 격려사

- ▶ 개회사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격려사 : 신현택 여성가족부 차관

14:30~14:50 경과보고(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과장)

14:5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 사회자 :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발표자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토론자 : 공경렬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차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사무관
김영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
최홍순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과 사무관
하영주 인천시 연수구청 사회복지담당자

(가나다 순)

16:3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 회

목 차

I. 연구의 배경	1
II. 보육료 지원제도 현황	4
1. 일반현황	4
2. 보육시설 및 재정현황	6
3. 보육료 지원제도	10
III. 해외 보육료 지원사례	21
IV. 개선방안	23
1.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1안)	24
2. 대체기준을 도입하는 방안(2안)	27
V. 결 론	31
참고문헌	32

표목차

<표 II- 1> 보육대상 연령 아동 추이(0~5세)	4
<표 II- 2> 2004년 보육시설 관련 현황	7
<표 II- 3> 보육시설 유형별 · 아동 연령별 이용실태(2004년)	8
<표 II- 4> 보육료 지원자 현황(2004년)	8
<표 II- 5> 정부의 보육예산(2000~2004년)	9
<표 II- 6>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2005년)	10
<표 II- 7>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액	11
<표 II- 8>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12
<표 II- 9> 조사대상 가구의 범위에 대한 기준	14
<표 II-10>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의 전국자산 내역	15
<표 II-11> 보육료 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7
<표 II-12> 지역별 기초공제대상액	19
<표 II-13> 재산의 소득환산율	20
<표 II-14>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계획	20
<표 III- 1> 부모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	22
<표 IV- 1> 각 대안들의 지원기준 및 행정소요	23
<표 IV- 2> 개선방안별 장단점	24
<표 IV- 3> 소득계층별 한도 재산가액 추정	26
<표 IV- 4>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변화 전망	26
<표 IV- 5> 제2안의 구성	28
<표 IV- 6>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비교(2004년)	29
<표 IV- 7> 아동가구 비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2004년)	30

그림목차

[그림 II-1] 보육아동의 인구 비중 추이(총인구 대비)	5
[그림 II-2] 각 세별 보육아동인구 비중 추이(총인구 대비)	6
[그림 II-3] 선정절차(업무흐름도)	13

I. 연구의 배경

-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근간으로 수정·활용되고 있음.
 - 이는 보육료 지원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슷한 선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덜 수 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행정수요가 많아져 서비스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 특히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업무부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원대상 소득수준의 증가는 대상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현 시스템으로 제도 유지 및 운용이 불가능할 가능성
 - 가구기준으로 2004년 지원대상은 전체가구의 25.2%(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불과하나 2007년까지 76.2%(100% 이하인 가구)로 늘어나 업무량이 3배 수준으로 증가될 것임.
 -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화면담, 방문면담 및 자료제출,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상가구 수의 증가는 관련 업무의 양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킴.

- 수요자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및 환산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수요자가 사전적으로 보육료 지원의 대상자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낮은 이해도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함.
 - 또한 복잡한 과정은 사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가구의 결정에 많은 민원을 제기토록 함.

- 또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독자적인 소득 및 재산과약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소득 및 재산자료의 공급은 국세청, 행자부 등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독자적인 소득 및 재산과약 노력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비록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소득 및 재산과약 자료도 존재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에 이용되고 있음.

- 한편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의 적시성, 행정수요 감소 및 국민이해도 향상은 제도의 효율적 운용(지원의 정확성)과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을 수 있음.
 - 즉, 제도의 단순화는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수혜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제도도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단순화와 지원의 효율성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제도 단순화와 지원 효율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지원기준은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직접급여로 운영되

어 제도로 인한 경제활동 감퇴유인이 큰 문제로 등장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중요함.

- 반면 보육료 지원은 간접급여로 경제활동 감퇴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보육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주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는 효과를 지닐 수도 있음.
-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선정시스템을 제도 목적에 맞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II. 보육료 지원제도 현황

1. 일반현황

- 보육료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6세 미만)은 2004년 기준 약 330만명으로 총인구의 6.9%에 달함.
 -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보육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까지 서서히 하락하여 279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며 인구대비 비중도 5.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그 중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의 수는 보육지원기준의 변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변동이 발생할 것이고, 소득의 분포에 따라서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

<표 II-1> 보육대상 연령 아동 추이(0~5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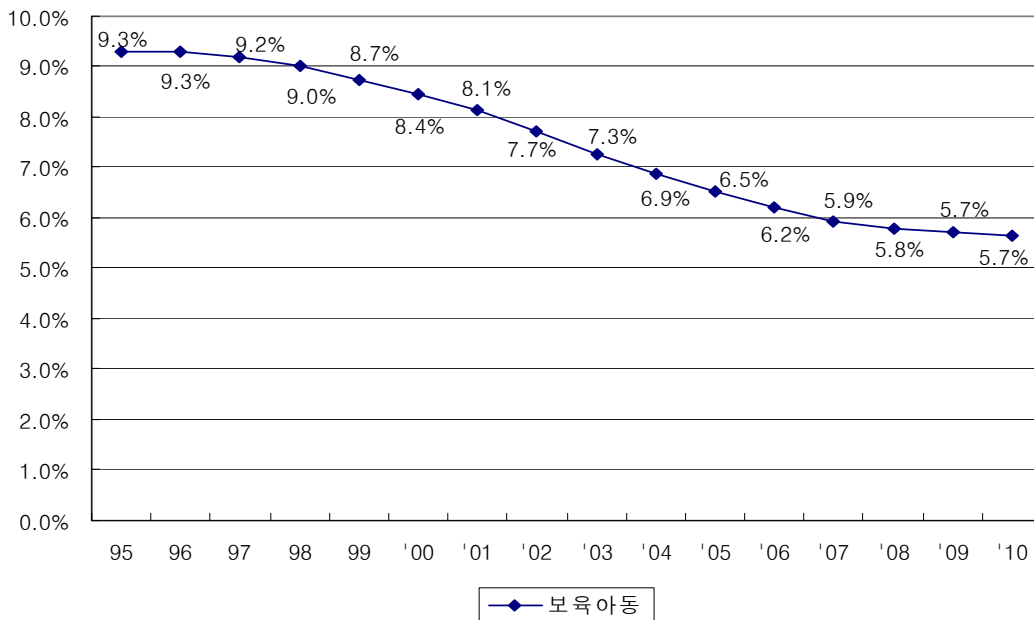
	합계 (인구 비중)	남자	여자
1995	4,192,911 (9.3)	2,237,660	1,955,251
1996	4,237,522 (9.3)	2,256,730	1,980,792
1997	4,231,289 (9.2)	2,248,760	1,982,529
1998	4,171,905 (9.0)	2,213,256	1,958,649
1999	4,066,423 (8.7)	2,150,313	1,916,110
2000	3,969,179 (8.4)	2,094,361	1,874,818
2001	3,851,130 (8.1)	2,024,915	1,826,215
2002	3,668,876 (7.7)	1,923,895	1,744,981
2003	3,474,231 (7.3)	1,818,417	1,655,814
2004	3,308,130 (6.9)	1,730,779	1,577,351
2005	3,158,538 (6.5)	1,644,514	1,514,024
2006	3,011,800 (6.2)	1,565,465	1,446,335
2007	2,880,788 (5.9)	1,495,135	1,385,653
2008	2,828,264 (5.8)	1,465,559	1,362,705
2009	2,808,887 (5.7)	1,453,668	1,355,219
2010	2,788,587 (5.7)	1,442,793	1,345,794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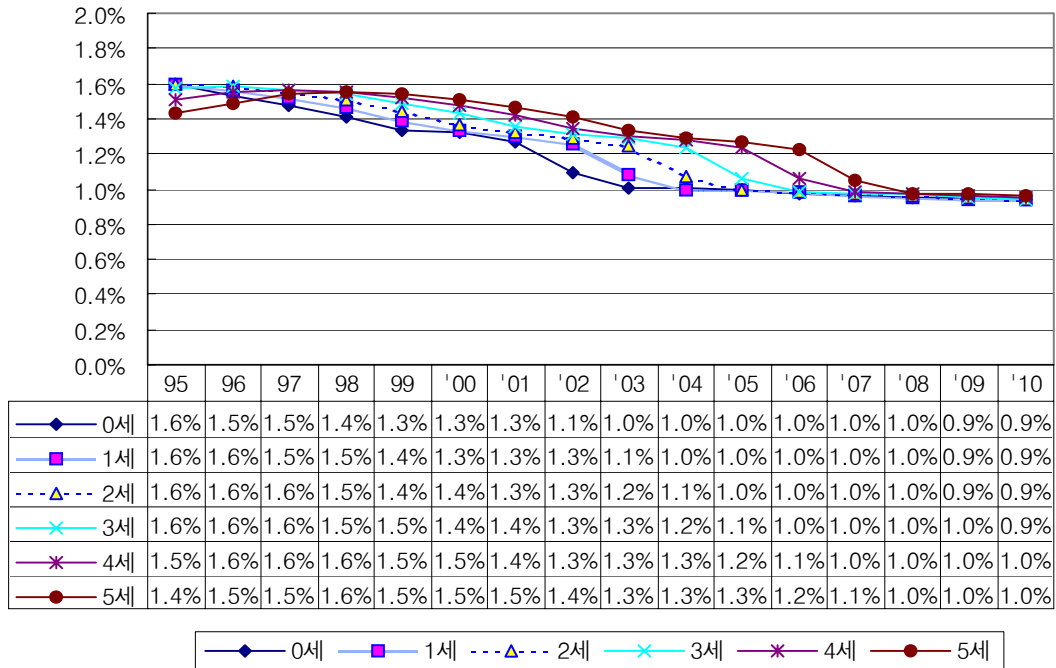
- 보육아동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총인구 대비 각 연령별로 1995년의 약 1.5~1.6%에서 2010년 약 1.0%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며 연령별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2002년에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그 편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존재하다가 2010년경에 거의 비슷한 편차를 보임.

- 보육아동 대비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부터 출산율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영아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가 2002년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보육아동 대비 영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아동별로는 97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영아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만 5세아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모든 연령에서 거의 같은 분포를 하고 있음.

[그림 II-1] 보육아동의 인구 비중 추이(총인구 대비)



[그림 11-2] 각 세별 보육아동인구 비중 추이(총인구 대비)



2. 보육시설 및 재정현황

-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설치현황, 이용실태 및 종사자수는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우선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유형별 구성비율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 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보육시설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 데 비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45.4%, 가정보육시설은 39.3%에 이릅니다.
- 이처럼 민간 개인보육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자 역시 전체 보육종사자의 50.6%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개인보육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수는 직장 또는 가정보육시설보다 많은 8명임.

<표 II-2> 2004년 보육시설 관련 현황

(단위: 명, 개, %)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법인	법인외	개인		
1. 아동 이용률(현원/정원)	(100.0)	(94.5)	(87.3)	(89.2)	(82.2)	(80.4)	(67.2)
보육아동현원	930,252 (100.0)	107,335 (11.5)	135,531 (14.6)	48,414 (5.2)	507,398 (54.5)	11,787 (1.3)	119,787 (12.9)
보육아동정원	1,133,589 (100.0)	113,620 (10.0)	155,183 (13.7)	54,294 (4.8)	617,442 (54.5)	14,666 (1.3)	178,384 (15.7)
2. 보육시설수	26,903 (100.0)	1,349 (5.0)	1,537 (5.7)	966 (3.6)	12,225 (45.4)	243 (0.9)	10,583 (39.3)
3. 종사자수	125,147 (100.0)	13,145 (10.5)	16,797 (13.4)	6,519 (5.2)	63,319 (50.6)	1,746 (1.4)	23,621 (18.9)
4. 시설 1개당 아동수		80	88	50	42	49	11
5. 직원 1인당 아동수		8.2	8.1	7.4	8.0	6.8	5.1

자료: 여성부, 일반보육현황.

- 보육시설 유형별로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비중(보육아동현원 기준)은 민간 개인보육시설(어린이집) 50만 7천명, 가정보육시설 약 11만 9천명으로 총 62만 7천명인 67.4%를 차지함.
 - 반면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은 약 10만 7천명 정도로 11.5%이고, 법인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이보다 다소 높은 14.6%임.

- 아동 연령별로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의 이용이 26.7%로 매우 높으나, 유아에서는 7.4%로 크게 낮아짐.

<표 II-3> 보육시설 유형별 · 아동 연령별 이용실태(2004년)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법인	법인의외	개인			
계	930,252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787	119,787	
영아	0세	21,445	1,513	1,254	1,780	7,530	237	9,131
	만1세	73,686	7,591	7,069	5,372	28,175	995	24,484
	만2세	167,785	17,561	18,874	10,221	82,534	2,099	36,496
	소계	262,916	26,665	27,197	17,373	118,239	3,331	70,111
	비율	(100.0)	(10.1)	(10.3)	(6.6)	(45.0)	(1.3)	(26.7)
유아	만3세	230,516	25,911	33,793	10,097	134,571	3,167	22,977
	만4세	213,679	26,819	36,802	10,650	121,374	2,881	15,153
	만5세	183,917	24,318	32,812	8,489	107,472	2,198	8,628
	만5세~	39,224	3,622	4,927	1,805	25,742	210	2,918
	소계	667,336	80,670	108,334	31,041	389,159	8,456	49,676
비율	(100.0)	(12.1)	(16.2)	(4.7)	(58.3)	(1.3)	(7.4)	

자료: 여성부, 보육상세통계.

-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약 28만명으로 2005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

<표 II-4> 보육료 지원자 현황(2004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5세 이상	계
법정저소득	1,460	4,835	8,926	13,741	15,867	16,234	12,643	73,706
기타저소득	3,258	13,884	28,409	42,418	44,431	66,643	7,223	206,176
계	4,718	18,719	37,335	56,159	60,298	82,877	19,866	279,882

자료: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004.

- 한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3년 6,270억이던 예산규모가 그 다음해에는 39% 증가한 8,72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보육예산 중 53.7%가 인건비 등의 시설지원이고 40.0%가 부모의 보육료 부담에 대한 지원금임.

<표 II-5> 정부의 보육예산(2000~2004년)

(단위: 백만원, %)

내역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설별 지원	인건비	185,034	206,636	214,643	348,772	452,277
	차량운영비	910	910	910	1,153	1,294
	교재교구비	6,331	6,329	6,115	6,040	15,126
	소계	192,275 (12.8)	213,875 (11.2)	221,668 (3.6)	355,965 (60.6)	468,697 [53.7] (31.7)
아동별 지원	저소득층보육료	96,970	130,066	104,856	134,432	212,950
	5세아 무상보육	11,882	12,508	103,288	108,508	124,538
	장애아 무상보육	-	-	-	10,764	12,049
	소계	108,852 (77.1)	142,574 (31.0)	208,144 (46.0)	253,704 (21.9)	349,537 [40.1] (37.8)
보육시설 기능 보장		3,005 (0.0)	3,050 (1.5)	5,175 (69.7)	16,467 (218.2)	52,054 (216.1)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477 (3.3)	1,432 (-3.0)	1,916 (33.8)	2,527 (31.9)	2,000 (-20.9)
계		305,609 (29.3)	360,931 (18.1)	436,903 (21.0)	628,663 (43.9)	872,288 (38.8)

주: 1. []는 2004년도 전체예산 중 지원유형별 예산규모의 비중을 나타냄.

2. ()는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각 연도.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보고』, 2005. p. 67 재인용.

3. 보육료 지원제도

가.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현행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및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기타 등 5개의 범주로 지원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정액지원(월 153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정액지원(월 299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월 30천~60천원)
 - 기타 보육료 : 별도로 정함.

① 저소득층의 차등보육료

- 저소득층의 차등보육료는 지원대상이 만0세~만4세까지로 계층(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아동은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기타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되고,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1층에 해당되고 기타저소득층 아동은 정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됨.
 - 정부의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층은 약 109만원에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인 2층은 136만원, 가계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3층은 170만원, 가계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4층은 204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함.

<표 II-6>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2005년)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09만원 이하	136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7만원 이하
3층	150만원 이하	170만원 이하	190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4층	184만원 이하	204만원 이하	224만원 이하	244만원 이하

주: 1.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2.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 소득인정액 계층별로 다른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보육대상자 연령별로는 연령에 따른 법정기준액을 지원함.

- 계층별로 지원비율은 1층은 100%, 2층은 80%, 3층은 60%, 4층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
- 계층별로 차등을 두며, 연령별로는 연령에 따른 법정기준액을 지원하는데, 0~1세(24개월 이하)의 경우는 299천원, 2세(36개월 이하)의 경우는 247천원, 3~4세(56개월 이하)의 경우는 153천원을 지원함.

<표 II-7>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액

(단위: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수납액
1층	법정저소득층	100%	0~1세	299,000	-
			2세	247,000	-
			3~4세	153,000	-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80%	0~1세	239,200	59,800
			2세	197,600	49,400
			3~4세	122,400	30,6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60%	0~1세	179,400	119,600
			2세	148,200	98,800
			3~4세	91,800	61,2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수준	30% (신규)	0~1세	89,700	209,300
			2세	74,100	172,900
			3~4세	45,900	107,100

② 두자녀 이상 보육료

□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2명 이상 보낼 때 둘째 이상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 가계소득 평균 이하 자녀에게 해당되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모두 해당됨.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가능

- 첫째아가 관내의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계평균 소득인 340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원
 - 정부지원단가는 만0~1세의 경우는 6만원, 만2세의 경우는 5만원, 만 3~5세의 경우는 3만원이 지원됨.

<표 II-8>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20만원 이하	340만원 이하	360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③ 만5세아 무상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아동 1인당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인 153천원을 지원함.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은 가계평균소득의 80% 이하의 가구에 해당되며, 가구소득 272만원 이하의 가구에 해당됨.

④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은 만0세~12세 취학전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중경증에 관계없이 월 299천원을 지원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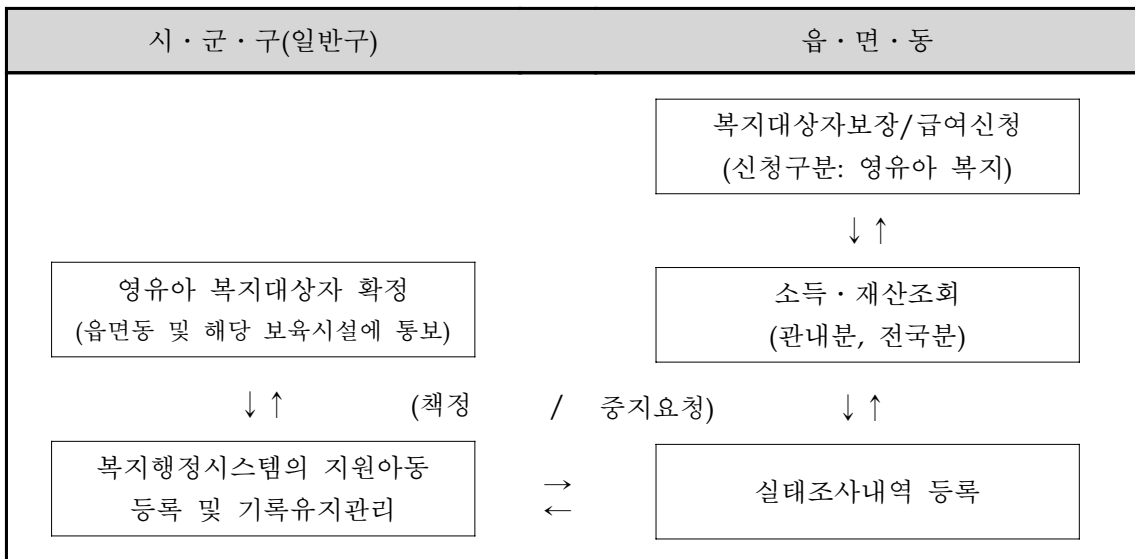
⑤ 기타 보육료

- 방과 후 보육료는 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취학아동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시 지원하며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나.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보육료 지원의 선정절차는 아동의 보호자 등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보육료 지원의 대상자(아동)를 선정하게 됨.
 - 이 절차는 서류를 신청하면 전산상의 조회나 기타 조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약 일주일~15일간의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함.

[그림 II-3] 선정절차(업무흐름도)



-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을 가구의 범위로 보고 있음.
-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가구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¹⁾.

<표 II-9>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에 대한 기준

범 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 2005년도 선정기준은 1층~4층과 만5세아, 두자녀의 6개층으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1층과 2층은 법정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3층 이상은 모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1층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을 대상
- 2층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3층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50% 이하인 자
- 4층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60% 이하인 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

1) 형제자매의 집, 소년·소녀 세대, 모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등.

- 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80% 이하인 자
 -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 이하인 자
- 조사는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 서류의 조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그러나 국세청의 종합소득은 약 2년 전의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현재는 한계를 가짐.

<표 II-10>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의 전국자산 내역

기관명	자산내역
국세청	종합소득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전국분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표준소득월액, 연금급여, 보험료납입정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표준보수월액
노동부	고용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방부	군인퇴직연금 연금급여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연금급여, 보수월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연금급여, 보수월액

- 자료조사를 위해 신청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확인,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정 등의 다양한 서류제출이 요구됨.
 -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월급명세서, 매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이 요구되고, 소득의 공제항목에 적용될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등의 납입영수증이 요구됨.
 - 재산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부채의 공제를 위하여 부채증명원 등이 필요
 -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서는 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진단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 요구되며,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관련 전산망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음.
 - 신청자의 경우는 상당히 많고 다양한 서류의 제출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번거로운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제기가 많음.
 -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의 제출이 보육수요자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경우 많은 행정부담을 초래하여 서비스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한 제도효율성 제고노력이 필요

<표 II-11> 보육료 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목적	제출서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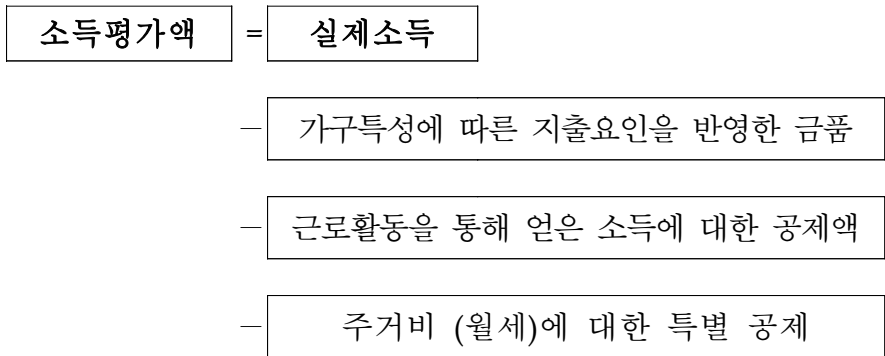
소득과 재산의 조사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

- 소득의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아니고 소득평가액을 사용
- 재산의 경우에는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소득으로 환산된 재산가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함.
- 적용대상은 2층, 3층, 4층 저소득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등이 해당됨.

① 소득조사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음.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 해당되며,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포함됨.

○ 기타소득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인 사적이전소득과 국가에서 보조받는 공적이전소득이 해당

② 재산조사

□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조사에서 산정된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소득환산액 중 1/3의 금액만을 소득에 합산

□ 재산의 종류²⁾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일반재산의 종류는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기타, 가축·종묘 등

2)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
-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을 포괄함.
 - 승용차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cc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로 분류

- 기초공제액은 공제대상 기본재산액으로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
 - 적용기준은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 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text{소득환산액} = (\text{재산의 종류별가액} - \text{기초공제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소득환산율}$$

<표 II-12> 지역별 기초공제대상액

(단위: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3,800	3,100	2,900

- 부채의 지출형태는 4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임.
 - 주거부채는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의미하며, 일반부채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가 각각 환산율이 다르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는 1/3의 금액을 적용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표 II-13>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재산의 산정은 재산유형에 따라 시가, 공시지가(시가표준) 등을 이용하여 추정
 -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경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보유 여부 및 소재지를 확인하고 시가파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가격산정
 -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가격산정
- 한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2005년 도시평균소득근로자 가구의 60% 이하에서 2007년에는 100% 이하로 확대될 계획

<표 II-14>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계획

연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소득 수준	소득 비율	지원 비율	소득 수준	소득 비율	지원 비율	소득 수준	소득 비율	지원 비율	소득 수준	소득 비율	지원 비율
1층	법정	9.7%	100%	법정	9.7%	100%	법정	9.7%	100%	법정	9.7%	100%
2층	차상위	5.4%	80%	차상위	5.4%	100%	차상위	5.4%	100%	차상위	5.4%	100%
3층	50%	10.3%	60%	50%	10.3%	100%	50%	10.3%	100%	50%	10.3%	100%
4층	60%	7.4%	30%	70%	25.2%	60%	70%	25.2%	70%	70%	25.2%	80%
5층				80%	12.2%	40%	80%	12.2%	50%	80%	12.2%	60%
6층							100%	13.8%	30%	100%	13.8%	40%
아동			27만		63.1%	77만		76.9%	81만		76.9%	85만

자료: 여성부.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절차와 지원대상 확대계획을 고려할 때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
 - 따라서 이러한 업무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Ⅲ. 해외 보육료 지원사례

- 많은 국가들은 보육공급을 위한 공급자 직접지원, 수요자 비용보조금, 세제 감면, 고용주 기부 등 다양한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지불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재정을 보충하고 있음.
 - 일부 국가(호주, 핀란드, 미국)에서는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 비용보조금은 보조금이 없이는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함.

- 주요 선진국들의 보육료 지원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상태 및 가구의 수입에 의존하여 결정됨.
 - 공급시설 중 공립시설은 최저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립시설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것임.
 - 연령에 따라서는 취학연령에 접근할수록 공적역할이 증가하며 동시에 부모의 부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호주의 경우 보육료 지원은 CA(Childcare Assistance)와 CR(Childcare Rebate)로 이루어져 있었고 CA는 자산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 7월 이후 CCB(Child Care Benefit)로 통합하고 지원금액은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결정

-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 보육료 지원은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퀘벡을 뺀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몇 개의 주는 공급시설의 수 혹은 총지원금의 규모 설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통제

-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대체로 부모들이 비용의 1/4~1/3을 부담하나 미국, 영국, 호주는 부모부담 비율이 매우 높음.
 - 부모부담 비율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의존함.
- 이스라엘, 스웨덴, 독일의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

<표 III-1> 부모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

국가	0~3세	3~6세
스웨덴	시와 수입에 따라 다양 (2~20% 부담)	4세 이상 무상
노르웨이	수입에 따라 다양 공립센터의 28-45% 부담	수입에 따라 다양 공립센터의 28-45% 부담
핀란드	수입에 따라 다양 보통 10~15% 부담 (월 1,100FIM이 부모 부담 상한선)	수입에 따라 다양 보통 10~15% 부담 (월 1,100FIM이 부모 부담 상한선)
덴마크	시, 수입에 따라 다양 (최대 33% 부담)	시, 수입에 따라 다양 (최대 33% 부담)
영국	수입이나 세금 수준에 따라 다양 (부모 30-60% 부담)	4세부터 무상 (3세 저소득층 무상)
이탈리아	보통 36% 부담 (수입의 12%)	공립은 무상(식비 제외) 사립은 다양
미국	수입에 따라 다양 보통 비용의 60% 부담 (수입의 18~25%)	보통 비용의 60% 부담 주가 지원하는 공립 예비-유치원의 4세의 일부와 유치원 학급 5세는 무상
호주	수입에 따라 다양 (보통 수입의 9%)	주가 지원하는 공립 예비학급의 4세는 무상

자료: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향(교육인적자원부, 2003)에서 재인용.

- 해외사례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은 소득기준이 적절할 것이며 지원비중이 높은 계층은 자산조사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경우 이미 자산조사를 거침.
- 소득기준은 대체적으로 소득세 신고자료가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면세점과 낮은 소득과약률로 인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IV. 개선방안

- 대안으로서는 ① 현재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정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완화정도 하)과 ②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완화정도 상)을 검토함.
 - 현재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정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1안)은 소득만을 산정기준으로 삼고, 재산은 최고한도만을 설정하는 대안임.
 -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2안)은 사회보험 중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임.
 -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보험료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하나만으로 결정하고 그 위의 계층에는 재산상한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임.

- 검토대안들은 지나친 효율성 중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며 각 대안에 따라 그 완화의 정도도 다름.
 - 기본적으로 기존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의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들임.
 - 재산수준은 보조지표로 활용

<표 IV-1> 각 대안들의 지원기준 및 행정소요

구분	① 현 제도 단순화 방안	② 건강보험 이용 방안
소득조사	필요	불필요
재산조사	필요	(일정소득 이상자)필요
소득환산	불필요	불필요
지원기준	소득 + 재산상한	건강보험료 + 재산상한(일정소득 이상자)

<표 IV-2> 개선방안별 장단점

구분	① 현 제도 단순화 방안	② 건강보험 이용 방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연속성 확보 - 행정의 효율성 제고: 소득인정액 산정이 필요치 않아 업무의 축소 - 신청자의 대기기간 축소 - 재산환산폐지로 제도 인지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부담의 완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 소득인정액 산정 및 소득과약 업무가 필요치 않아 업무가 대폭 감소 - 신청자의 대기기간 축소 - 저소득계층에는 신속한 지원과 함께 중간소득계층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 국민의 제도 인지도 향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재산조사 부담은 다소 축소되나 여전히 존재 - 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파 지역간의 보험료 책정기준이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 지원대상이 많은 중상소득 근로자계층의 재산조사는 여전히 필요

1.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1안)

- 기존의 복잡한 제도운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원기준을 소득으로 설정하되 재산은 그 한도만을 규정하여 단순화하는 방안임.
 - 기존의 소득 포괄범위는 국세청 자료의 신고소득 범위 내로 한정하며 재산은 부동산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함.
 - 부동산의 경우 행자부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며 전/월세보증금은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조사
 -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
 - 제도 단순화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한 대상 데이터베이스 축소로 이어져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 대기기간이 줄어들.

- 재산은 한도만을 설정하고 소득으로만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4인가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함.

- 우리나라 평균 가구규모 2.8인(2005년 17.5백만가구, 인구 48.3백만명 기준), 낮은 출산율 1.19명(2003년), 자녀출산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의 규모는 4인 이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보육료 지원은 생계지원이 아니므로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 재산한도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4계층(70% 이하) 이하의 경우 8천5백만원 ~ 1억 1천5백만원, 5계층(100% 이하)의 경우 1억 2천만원 ~ 1억 6천5백만원 수준이 바람직
- 재산수준이 4계층(70% 이하)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단계로 설정
 - 향후 수혜계층의 규모, 재정소요, 재산분포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
 - 상한액의 변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한도액 변화 혹은 임금 상승률 등에 연동
- 소득계층별 소득인정액과 평균소득액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계층별 재산한도액을 구하면 4계층(70% 이하) 이하의 경우 약 8천5백만원, 5계층(100% 이하)은 1억 2천만원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재산한도액이 6천6백만원(4인가구, 대도 시 기준)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재산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4계층의 경우 1억 1천5백만원, 5계층은 1억 6천5백만원

<표 IV-3> 소득계층별 한도 재산가액 추정

(단위: 만원)

	3계층(50% 이하)	4계층(70% 이하)	5계층(100% 이하)
소득인정액 ¹⁾	154.1	204	286.3
평균소득 ¹⁾	159.7	190.6	237.5
재산액 ¹⁾	-5.6	13.4	48.8
환산율	0.0417	0.0417	0.0417
순재산(A)	0	964	3,511
재산변동허용치(B) (소득의 25%)	2,872	3,428	4,272
재산공제액(C)	3,800	3,800	3,800
재산한도(A+B+C)	6,672	8,192	11,582
적용재산한도	8,500	8,500	12,000

주: 1) 여성부의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분담' 자료 이용

2) 이 수치는 일반재산기준 환산에 기초함.

<표 IV-4>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변화 전망

	3계층(50% 이하)	4계층(70% 이하)	5계층(100% 이하)
소득인정액 평균	154.1	204.0	286.3
평균소득	159.7	190.6	237.5
아동비율(%)	7.5	16.0	21.1
수혜대상 아동증감(%p)	-2.8	6.0	12.4
제도변경후 아동비율(%)	4.7	24.8	27.5
총수혜아동 변화(%p)	-2.8	8.8	6.4
보육료 지원비율(%)	100.0	60.0	40.0
예산증감률(%)	-37.4	66.9	30.2

주: 1. 수혜대상 아동 증감률은 소득인정액 대신 소득기준의 적용으로 높아진(혹은 낮아진)

소득구간으로 인한 수혜대상 아동의 변화.

2. 제도변경후 아동비율은 기존 아동비율 + 소득기준 변경효과 + 1단계 하위계층 변화

3. 총수혜아동 변화 = 제도변경후 아동비율 - 기존 아동비율

4. 예산증감 = $\sum(\text{변화계층 아동증감률} \times \text{보육료 지원비율}) / (\text{기존 아동비율} \times \text{보육료 지원비율})$

- 소득기준으로의 변경으로 각 계층별로 -37.4%, 66.9%, 30.2% 소요재원 변동이 예상됨.
 - 이를 3계층 총지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2.81%, 6.42%, 2.55%씩 변화하여 전체적으로는 6.16%의 재정지출 증대효과가 예상됨.
 - 3계층의 지원액 감소는 동 계층의 순재산액이 음수로 나타나 소득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지원대상자 중 일부는 4계층에 속하게 되기 때문임.
 - 한편 이러한 재정소요 추정은 최고한도 소득의 적용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최대치의 의미가 있음.

2. 대체기준을 도입하는 방안(2안)

- 대체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은 사회보험 중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방안임.
 - 소득 및 재산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이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실정
- 건강보험료를 이용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제시되면 동 소득에 적용되는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함.
 - 부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이 고려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재산의 한도를 설정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함.
- 구체적으로 일정수준의 보험료 이하의 가구는 건강보험료 하나만으로 결정하고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재산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이용에 의한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표 IV-5> 제2안의 구성

	기준	보완장치
4계층 이하(70% 이하)	건강보험료	-
5계층(100% 이하)	건강보험료	재산한도

- 제도는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운영
 - 한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복수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납부보험료 합을 기준

- 기존의 소득기준을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고 동일한 보험료 수준을 지역에 적용할 경우 가구분포는 기존의 보육실태 조사와 다르게 나타남.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직장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16등급, 3계층의 경우 19등급을 나타냈고, 4계층의 경우에는 24등급을 나타냈으며, 5계층의 경우에는 30등급을 기록함.
 - 비록 개인기준과 가구기준의 직접비교는 그 한계가 있으나 각각의 누적비율은 18.0%, 27.1%, 50.1%, 77.1%로 나타나 보육실태 조사의 13.1%, 25.2%, 48.9%, 76.2%에 비해 저소득층일수록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면 그 누적비율이 16.2%, 27.4%, 49.0%, 72.5%로 나타나 직장가입자보다 차이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의 편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존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건강보험료로 환산·이용할 경우에는 대상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
 - 이러한 소득분포의 차이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과약의 어려움, 샘플조사의 편이성 등에서 기인할 수 있음.

<표 IV-6>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비교(2004년)

(단위: %, 원)

구 분	소득기준 (누적비율)	직장		지역	
		건강보험료	누적비율	건강보험료	누적비율
차상위	127만원 (13.1)	16등급 27,360	18.0	16등급 26,320	16.2
3계층(50%)	159만원 (25.2)	19등급 33,680	27.1	20등급 33,740	27.4
4계층(70%)	222만원 (48.9)	24등급 47,990	50.1	26등급 48,200	49.0
5계층(100%)	318만원 (76.2)	30등급 66,930	77.1	33등급 67,110	72.5

- 따라서 수혜가구 비율이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되는 적정보험료를 산정해 보면 3층(평균소득의 50% 이하)은 3만 4천원, 4층(평균소득의 70% 이하)은 4만 9천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됨.
 - 아동가구비율에 따라 분포를 살펴보면 3층 이하가 25.2%로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의 누적분포를 살펴보면 직장은 19등급으로 지역은 20등급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각각 3만 3,680원과 3만 3,740원으로 나타나 적정보험료를 3만 4천원으로 책정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누적분포가 약 13.1%를 기록하여 직장의 경우는 14등급에 해당하고 지역의 경우는 15등급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각각 2만 3,150원, 2만 4,470원으로 적정보험료는 2만 5천원으로 책정

<표 IV- 7> 아동가구 비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2004)

(단위: %, 원)

	가구비율 (누적비율)	직장		지역		책정보험료
		건강보험료	누적비율	건강보험료	누적비율	
차상위 (127만원)	13.1	14등급 (23,150)	12.6	15등급 (24,470)	13.2	25,000 (14,15등급)
50% 이하 (159만원)	12.1 (25.2)	19등급 33,680	27.1	20등급 33,740	27.4	34,000 (19,20등급)
60% 이하 (191만원)	6.9 (32.1)	21등급 38,520	34.8	22등급 38,310	34.3	39,000 (21,22등급)
70% 이하 (222만원)	16.8 (48.9)	24등급 47,990	50.1	26등급 48,200	49.0	49,000 (24,26등급)
80% 이하 (254만원)	8.3 (57.2)	25등급 51,150	55.0	28등급 53,140	55.7	54,000 (25,28등급)
100% 이하 (318만원)	19.0 (76.2)	30등급 66,930	77.1	34등급 70,200	75.4	70,500 (30,34등급)

- 재산한도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5계층(70~100%)의 경우 1억 2천만원 ~ 1억 6천5백만원 수준이 바람직
 - 소득 대비 재산환산액 비율이 4계층을 넘어서서 급속하게 증가
 - 향후 수혜계층의 규모, 재정소요, 재산분포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
 - 상한액의 변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한도액 변화 혹은 임금 상승률 등에 연동

- 건강보험료를 수정하여 이용하는 방안은 기존의 현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비해서 행정적인 소요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료만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여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V. 결 론

- 기존의 선정시스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따라 관련 자료검증 및 전환과정이 복잡함.
 - 현재는 소득액에 재산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제도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현행의 보육료 지원자 선정시스템의 유지는 불가능한 실정
 - 소득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동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충원은 한계로 인해 제도의 운용가능성 및 효율성 급속저하 가능

- 따라서 보육료 지원 선정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
 - 선정시스템의 단순화는 제도적용의 정확성과는 상충관계에 있어 단순화와 정확성을 조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기존 시스템의 단순화(1안)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안(2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서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 및 재산조사 업무 감소를 통해 행정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제도운영의 정확성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대안
 - 수요자의 제도 이해도 상승으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 재산규모가 증가하는 소득계층에는 재산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기준의 단점을 보완
 - 소득인정액을 소득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하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기준의 조정이 필요

참고문헌

- 나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서문희 · 김미숙 · 박세경 · 최은영 · 임정기,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004.
- _____, 「보육통계」, 2005.
- Bertram, Tony and Christine Pascal,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Background Report for the United Kingdom*, University College Worcester, 2000.
- Cleveland, Gordon and Michael Krashinsky, *Financial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OECD, 2002.
- Doherty, Gillian, Martha Friendly and Jane Beach,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Canadian Background Report*, Canada, 2000.
- OECD,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2001.
- Press, Frances and Alan Hayes,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Australian Background Report*,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2000.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Background Repor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0.